

# 2021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

위원정수	재적위원	참석위원
7	7	5

I. 개최일 및 장소 : 2022. 04. 15.(금) 16:00, 3층 회의실

- 참석 위원 : (교직원) 정영준, 금지환, (법인) 방진희, (학생) 유정원, 황제만
- 불참 위원 : (학생) 이철수, (전문) 임경자

II. 개회 선언 : 재적 위원 7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

## III. 심의 안건

- 제1호 :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

## IV. 회의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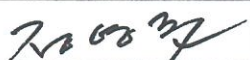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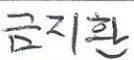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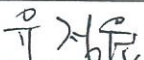
-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고 2022.03.01.부터 1년의 위원 임기가 시작되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하고 참석한 위원 상호간 논의 끝에 정영준 위원을 전년도에 이어 연임으로 위원장으로 선출하다.

가. 제1호 :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

- 정영준 위원장 : 제1호 안건인 “2021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” 심의 건을 상정한 후, 소관 부서인 사무처장으로서 안건에 대한 설명을 회의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자세히 하다.

### <잉여금 처리 원칙 및 집행>

- 잉여금이란 2021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의 차이를 뜻함
  - ※ 예시: 2021회계연도 결산 차기이월자금(100) - 2022회계연도 본예산 전기이월자금(50) = 잉여금(50)
- 2021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사업 집행 잔액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(2022회계연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자금)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방안 마련해야 함
- 20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

대표 간서명	정영준 	금지환 	유정원 
--------	---	--	---

<잉여금 처리원칙(안)>

-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·사고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해당 이월 사유에 따라 2022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, 기타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교육환경개선, 장학금 등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함
- 정영준 위원장 : 안건 설명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하다.
- 황제만 위원 : 2021회계연도 등록금회계의 잉여금이 얼마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 문의하고,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원칙(안)을 검토한 결과 우리 대학 실정에 맞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심의할 것을 제안하다.
- 금지환 위원 : 황제만 위원의 제안에 동의하다.
- 방진희 위원 : 금지환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다.
- 정영준 위원장 : 2021회계연도 등록금회계의 잉여금의 정확한 금액은 최종 결산을 해야 확정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약 4천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답변하고,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 심의에 대하여 추가 질의사항이 있는 지 다시한번 확인한 후 전체 위원이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다고 하여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언하다.  
(찬성 5명 : 정영준, 금지환, 방진희, 유정원, 황제만 / 반대 0명)

V. 폐 회

- 위원장이 참석한 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회의록에 간서명할 위원으로 정영준 위원장, 금지환 위원, 유정원 위원이 선정되었음을 선언하고, 2021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폐회를 선언하다.

붙임 : 2021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 1부.

2022년 04월 15일

위원장	정영준	<u>정영준</u>
위원	금지환	<u>금지환</u>
위원	방진희	<u>방진희</u>
위원	유정원	<u>유정원</u>
위원	황제만	<u>황제만</u>

(붙임자료)

## 2021학년도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자료

□ 일시 및 장소 : 2022. 04. 15.(금) 16:00 ~  
3층 회의실

□ 심의 안건

제1호 :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

예 명 대 학 원 대 학 교



## [ 제1호 안전 ]

###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잉여금 처리원칙(안)

#### □ 잉여금 처리 원칙 수립 및 집행

- 잉여금이란 2021회계연도 결산상 차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과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(등록금회계)의 차이를 뜻함

※ 예시: 2021회계연도 결산 차기이월자금(100) - 2022회계연도 본예산 전기이월자금(50) = 잉여금(50)

- 2021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예산집행 후 사업 집행잔액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잉여금(2022회계연도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이월자금)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사용방안 마련해야 함

※ 예시: 등록금회계의 잉여금을 직접교육비로 활용, 장학금 지급 등 등록금 인하 부문에 사용 등

⇒ 잉여금은 본예산 수립 시 매년 검토를 통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새롭게 심의·의결하여야 하며, 별도 안전으로 상정되어야 함

- 2021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잉여금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정한 잉여금처리원칙에 따라 2022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용

#### □ 잉여금 처리 원칙(안)

- 2021회계연도 교비회계(등록금회계) 결산 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명시·사고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해당 이월 사유에 따라 2022회계연도 등록금회계 지출예산으로 편성하고, 기타이월에 따른 잉여금은 교육환경개선, 장학금 등 교육비 예산으로 편성함

→ 2022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

※ 2022회계연도 등록금회계 본예산 상 미사용전기이월자금 계상액 : 0원